

## 광명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

제정 2010. 12. 31 훈령 제299호  
일부개정 2013. 12. 12 훈령 제335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  
일부개정 2014. 12. 23 훈령 제344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직위명이 없는 실무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의 적용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6급(상당) 이하 일반직·별정직 지방공무원과 직위가 없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. <개정 2013. 12. 12>

제3조(대상 업무)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. 다만,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.

제4조(대외직명) 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“주무관”으로 한다. <개정 2014. 12. 23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업무분야별·직렬별·계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·부여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12. 23>

제5조(대외직명의 사용) ① 대외직명은 공문서,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.

② 대외직명은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, 기념패, 명패 및 명함 등에 직급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### 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. 12. 12 훈령 제335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광명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광명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

제2조의 본문중 “기능직”은 삭제하고, “계약직”은 “임기제”로 한다.

② 부터 ⑤ 까지 생략

부칙 <2014. 12. 23 훈령 제344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